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의 안 번 호 3028 제출연월일: 2024. 8. 21.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현행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규율되고 있어 분쟁조정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영하거나 공정거래 관련 분야의 분쟁조정제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6개 법률에 산재된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과 관련된 규정들을 하나의 법률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개별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정위원회의 구성, 분쟁조정신청 각하사유, 분쟁조정절차 종료사유 등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한편,

공정거래 관련 분야의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약관분쟁 조정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다른 공정거래 관련 분야의 분쟁에도 도입하고, 감정·자문제도 및 간이분 쟁조정절차를 새로 도입하는 등 공정거래 관련 분야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역할 강화(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실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 범위에 공정거래 관련 피해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추가하여 그 역할을 강화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및 사무국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나. 공정거래관련분쟁 조정위원회 제도 정비(안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
 - 1) 공정거래 관련 분쟁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와 해임·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조정 위원회 위원의 연임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함.
 - 2) 불공정거래분쟁 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 공정거래분쟁' 조정위원회에도 다른 조정위원회와 같이 조정위원 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 하도록 함.
- 다. 공정거래관련분쟁 조정제도 정비(안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
 - 1) '하도급거래분쟁' 및 '약관분쟁'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다른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에서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조정신청한 경우'를 조정대상에 포함함.

- 2) 사업자가 조정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약관분쟁' 조정에 서도 다른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에서와 같이 조정절차를 종료할 때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
- 3) '약관분쟁'의 분쟁당사자 간 합의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다른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에서와 같이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한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의사항이이행된 경우에는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함.
- 4) '약관분쟁'의 경우 분쟁당사자의 조정신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의뢰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약관분쟁을 제외한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경우 분쟁당사자의 조정신청에 대해서만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공정거래관련 분쟁조정의 신청 및 의뢰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여 분쟁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조정 간 형평을 도모함.
- 5) 공정거래관련분쟁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분쟁당사자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등에는 조정위원회 위원장 1명이 조정하는 '간이조정절차'를 도입하여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함.

- 6) 공정거래관련분쟁 조정의 성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정 중에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라.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안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약관분쟁 조정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불공정거 래분쟁, 가맹사업거래분쟁,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 대리점거래분쟁 및 하도급거래분쟁 조정에도 도입함.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정거래관련법령"이란 다음 각 목의 법령을 말한다.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2. "공정거래관련분쟁"이란 다음 각 목의 분쟁을 말한다.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이하 "불공정거래분쟁"이라 한다)

- 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거래 와 관련된 분쟁(이하 "가맹사업거래분쟁"이라 한다)
- 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 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와 관련된 분쟁(이하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이라 한다)
- 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리점거래와 관련된 분쟁(이하 "대리점거래분쟁"이라 한다)
- 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거래와 관 련된 분쟁(이하 "하도급거래분쟁"이라 한다)
- 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관과 관련된 분쟁(이 하 "약관분쟁"이라 한다). 다만,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와 관련된 약관분쟁은 제외한다.
- 3. "공정거래관련피해"란 공정거래관련분쟁과 관련된 피해를 말한다.
- 4. "분쟁당사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로서 조정의 대상이 된 공정거래관련분쟁의 당사자를 말한다.
 - 가. 불공정거래분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
 - 나. 가맹사업거래분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본부(이하 "가맹본부"라 한다) 및 같은 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이하 "가맹점사업자"라 한다)

- 다.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이하 "대규모유통업자"라 한다), 같은 법에 따른 납품업자(이하 "납품업자"라 한다) 및 같은 법에 따른 매장임차인(이하 "매장임차인"이라 한다)
- 라. 대리점거래분쟁: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급업자(이하 "공급업자"라 한다) 및 같은 법에 따른 대리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
- 마. 하도급거래분쟁: 다음의 자
 -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이하 "원사업자"라 한다) 및 같은 법에 따른 수급사업자(이하 "수 급사업자"라 한다)
 -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 업중앙회
- 바. 약관분쟁: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에 따른 고객. 다만,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는 제외하다.

- 5. "공정거래집단분쟁"이란 분쟁당사자가 다수인 공정거래관련분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거래관련분쟁을 말한다.
- 제3조(신의성실의 원칙) ① 공정거래관련분쟁의 조정을 담당하는 기관 은 조정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 ② 공정거래관련분쟁의 조정절차에 참여하는 분쟁당사자는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

제2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제4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① 공정거래관련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며,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을 설립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조정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조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 ⑤ 조정원이 아닌 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⑥ 조정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정관) ① 조정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6. 업무에 관한 사항
 -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9. 내부규정의 제정 ·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조정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조정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제6조(업무) 조정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정거래관련분쟁의 조정 및 상담
- 2. 공정거래관련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및 지원
- 3.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규제가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공

정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

- 4. 사업자의 거래 관행과 행태의 조사 및 분석
- 5. 공정거래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국제협력
-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 및 같은 법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 7. 다른 법령에서 조정원에 위탁하거나 조정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분쟁 조정 등의 업무
- 8. 그 밖에 공정거래관련분쟁의 해결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관련 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제7조(임원 및 임기) ① 조정원에 임원으로서 원장과 부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② 조정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조정원의 부원장(이하 "부원장"이라 한다)은 상임으로 하고, 원장과 부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③ 원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 각호의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④ 부원장은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⑤ 원장과 부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⑥ 원장과 부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

- 로 연임할 수 있다.
- ⑦ 제1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조정원을 대표하고, 조정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원장 및 부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감사는 조정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제9조(이사회) ① 조정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 결하기 위하여 조정원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원장, 부원장, 그 밖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국) ① 제6조제1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원에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재원) 조정원의 설립·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1. 정부출연금

- 2. 그 밖에 조정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등) ① 조정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조정원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조정원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려면 그 변경사유와 내용을 적은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조정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업무의 지도·감독)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원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조정원에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조정원의 장부·서류·시설과그 밖의 물건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원에 그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장 조정위원회

제1절 조정원 조정위원회

- 제14조(조정원 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조정원에 다음 각 호의 조정위원회를 둔다.
 - 1. 공정거래분쟁조정위원회
 - 2.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위원회
 - 3. 대규모유통분쟁조정위원회
 - 4. 대리점분쟁조정위원회
 - 5. 하도급거래분쟁조정위원회
 - 6. 약관분쟁조정위원회
 - ② 제1항 각 호의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소관 공정거래관련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 2.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3. 다른 법령에서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한 사항 제15조(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 ②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위촉한다.
- 1. 제14조제1항제1호의 공정거래분쟁조정위원회 및 같은 항 제6호의 약관분쟁조정위원회: 공정거래분쟁조정위원회 및 약관분쟁조정위 원회 위원
- 2. 제14조제1항제2호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제4항제1호가 목의 위원
- 3. 제14조제1항제3호의 대규모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제4항제2호가목 의 위원
- 4. 제14조제1항제4호의 대리점분쟁조정위원회: 제4항제3호가목의 위
- 5. 제14조제1항제5호의 하도급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제4항제4호가목 의 위원
- ③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법률·경제·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한 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공정거래 · 가맹사업거래 · 대규모유통업거래 · 대리점거래 · 하도급

거래·약관 관련 분야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판사·검사의 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있거나 있 었던 사람
- 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공정거래·가맹사업거래·대규모유통업거래·대리점거래·하도급 거래·약관 관련 분야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 그 밖에 공정거래·가맹사업거래·대규모유통업거래·대리점거래 ·하도급거래·약관에 관한 업무, 소비자 보호에 관한 업무 또는 공정거래관련분쟁의 조정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 이상 수행한 사람
- ④ 제3항에 따라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이 각각 같은 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1. 제14조제1항제2호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위원회: 다음 각 목의 위원
 - 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 나.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 다.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 2. 제14조제1항제3호의 대규모유통분쟁조정위원회: 다음 각 목의 위원
 - 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 나. 대규모유통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 다.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 3. 제14조제1항제4호의 대리점분쟁조정위원회: 다음 각 목의 위원
 - 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 나. 공급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 다. 대리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 4. 제14조제1항제5호의 하도급거래분쟁조정위원회: 다음 각 목의 위
 - 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 나. 원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 다.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 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임직원은 해당 호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1.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임직원: 제4항제1호가목의 위원
- 2. 대규모유통업자·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의 임직원: 제4항제2 호가목의 위원

- 3.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의 임직원: 제4항제3호가목의 위원
- 4.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임직원: 제4항제4호가목의 위원
- ⑥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원분쟁별조정위 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17조(위원의 신분 보장) ①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②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解囑)되 지 아니한다.
 -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15조제5항 각 호의 위원이 해당 호에 따른 임직원이 된 경우
 - 5.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6.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사건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조정사건의 분쟁 당사자가 되거나 그 조정사건의 분쟁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 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조정사건의 분쟁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분쟁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 또는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해당 조정사건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5. 위원이 해당 조정사건의 분쟁당사자인 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 ② 분쟁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 위원에게 공정거래관련분쟁의 조정을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공정거래관련분쟁의 조정을 지연하기 위한 목적읶이 분명한 경우에는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 위원장의 결정

- 으로 기피신청을 각하한다.
- ④ 제2항의 기피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원분쟁별 조정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으로 해당 위원을 해당 조정사건의 심의 에서 제외한다.
- ⑤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조정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9조(위원장의 영리업무 금지 등) ①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 위원 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 ③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제20조(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 괄한다.
 - ②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제2

- 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지명하여야 한다.
- 1. 제14조제1항제2호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제15조제4항제 1호가목의 위원
- 2. 제14조제1항제3호의 대규모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제15조제4항제2 호가목의 위원
- 3. 제14조제1항제4호의 대리점분쟁조정위원회: 제15조제4항제3호가 목의 위원
- 4. 제14조제1항제5호의 하도급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제15조제4항제4 호가목의 위원
- ③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 1.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에서 소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한 사항
 - 2. 그 밖에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의

결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 의 위원장이 된다.
- 1. 제14조제1항제1호의 공정거래분쟁조정위원회 및 같은 항 제6호의 약관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 공정거래분쟁조정위원회 및 약관분 쟁조정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의 공정거래분쟁조정위원 회 및 약관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구성
- 2. 제14조제1항제2호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 다음 각 목의 위원으로 구성
 - 가.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 위원장
 - 나. 제15조제4항제1호나목의 위원 중 1명
 - 다. 제15조제4항제1호다목의 위원 중 1명
- 3. 제14조제1항제3호의 대규모유통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 다음 각 목의 위원으로 구성
 - 가.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 위원장
 - 나. 제15조제4항제2호나목의 위원 중 1명
 - 다. 제15조제4항제2호다목의 위원 중 1명
- 4. 제14조제1항제4호의 대리점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 다음 각 목의 위원으로 구성
 - 가.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 위원장

- 나. 제15조제4항제3호나목의 위원 중 1명
- 다. 제15조제4항제3호다목의 위원 중 1명
- 5. 제14조제1항제5호의 하도급거래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 다음 각 목의 위원으로 구성
 - 가.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 위원장
 - 나. 제15조제4항제4호나목의 위원 중 1명
 - 다. 제15조제4항제4호다목의 위원 중 1명
- ③ 소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소위원회의 의결은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의 결과를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시 · 도 조정위원회

제22조(시·도 조정위원회의 설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가맹사업거래 분쟁 및 대리점거래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 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 에 다음 각 호의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시 · 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위원회
- 2. 시 · 도 대리점분쟁조정위원회
- 제23조(시·도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22조 각 호의 조정위원회(이하 "시·도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같은 조 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는 "시·도조정위원회"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지사"로 본다.
 - ② 시·도조정위원회에는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절 사업자단체 조정위원회

- 제24조(사업자단체 조정위원회의 설치) 사업자단체는 하도급거래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자단체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25조(사업자단체 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제24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조정위원회(이하 "사업자단체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수와 임기 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자단체조정위원회가 정 한다.
 - ② 사업자단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사업자단체조정위원회 위원은 해당 사업자단체조정위원회를 두는 각 사업자단체의 장이 위촉하며, 사업자단체가 공동으로 사업자단체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의 장들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 ④ 사업자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사업단체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6조(사업자단체조정위원회 운영 등) ① 사업자단체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는 "사업자단체조정위원회"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자단체의 장"으로 본다.
 - ② 사업자단체조정위원회에는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사업자단체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공정거래관련분쟁의 조정

제1절 조정

제27조(공정거래관련분쟁의 조정신청 등) ① 제2조제4호 각 목의 구분 에 따른 자로서 공정거래관련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
- 2. 시 · 도조정위원회
- 3. 사업자단체조정위원회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관련분쟁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 제28조(둘 이상의 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조정사건의 담당) ① 제2조제4 호나목에 따른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급업자·대리점이 서로 다른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 또는 시·도조정위원회에 가맹사업거래분쟁 또는 대리점거래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거나 여러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 또는 시·도조정위원회에 중복하여 가맹사업거래분쟁 또는 대리점거래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정위원회 중 가맹점사업자 또는 대리점이 선택한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 또는 시·도조정위원회에서 해당 조정사건을 담당한다.
 - 1.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
 - 2. 가맹본부 또는 공급업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도의 시 ·도조정위원회
 - 3. 가맹점사업자 또는 대리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도의 시·도조정위원회

- ②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원사업자·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중앙회가 서로 다른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 또는 사업자단체조정위원회에 하도급거래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 또는 같은 목 2)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중앙회가 신청한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 또는 사업자단체조정위원회에서 해당 조정사건을 담당한다.
- 제29조(공정거래관련분쟁 조정신청 등의 접수)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 정거래관련분쟁의 조정신청을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 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관련분쟁의 조정의뢰를 받은 조정위원회는 즉시 그 접수사실 등 조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알려야 한다.
 - 1.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 및 사업자단체조정위원회의 경우: 분쟁 당사자 및 공정거래위원회
 - 2. 시·도조정위원회의 경우: 분쟁당사자, 공정거래위원회 및 해당 시·도지사
- 제30조(공정거래관련분쟁 조정신청 등의 각하)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 정거래관련분쟁의 조정신청을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 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관련분쟁의 조정의뢰를 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 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 2. 공정거래관련분쟁이 아닌 사안임이 명백한 경우
- 3. 공정거래관련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공정거래위 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조정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그 밖에 공정거래관련분쟁의 내용·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31조(간이조정절차) ①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는 공정거래관련분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조정하는 절차(이하 "간이조정절차"라 한다)에 따라 공정거래관련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 1. 공정거래관련분쟁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분쟁당사 자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 2. 분쟁당사자 모두가 합의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는 간이조정절차 중에 공정거래관련분쟁 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

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의 조정이나 소위원회의 조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 ③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는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나 제2항에 따라 다른 조정절차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한다.
- 제32조(합의의 권고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에게 공정거래관 런분쟁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 ② 분쟁당사자는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거나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있다.
- 제33조(감정 및 자문) ① 조정위원회는 공정거래관련분쟁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감정 및 자문에 드는 기간은 제34조제2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감정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분쟁당

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감정에 드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가 부담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감정 비용의 산정 및 납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공정거래관련분쟁 조정절차의 종료 등)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 1. 분쟁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
 - 2. 분쟁당사자가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신청한 경우
 - 3. 그 밖에 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 1. 분쟁당사자가 스스로 합의하거나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 관련분쟁이 조정된 경우
 - 2. 분쟁당사자가 합의의 권고 또는 조정안의 수락을 거부하는 등 공 정거래관련분쟁이 조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 3.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관련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정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가 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이 지나도 조정이 되지아니한 경우

- ③ 조정위원회는 제30조에 따라 공정거래관련분쟁의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관련분쟁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1.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 및 사업자단체조정위원회의 경우: 공정 거래위원회
- 2. 시 · 도조정위원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해당 시 · 도지사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0조에 따라 공정거래관련분쟁의 조정신청이 각하되거나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관련분쟁의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분쟁당사자에게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5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공정거래관련분 쟁의 조정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된 경우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당사 자 모두가 조정조서의 작성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 우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및 조정조서를 작성한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합의사항이 이행된 경우에는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약관분쟁에 대한 조정조서는 제외한다)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 제36조(소송과의 관계) ① 조정이 신청된 공정거래관련분쟁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訴)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 다.
 -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종류가 같거나 유사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제37조(시효의 중단)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관련분쟁의 조정 신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관련분쟁의 조정의뢰는 시 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조정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이 거나 조정의뢰가 철회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 1.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 2.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 는 공정거래관련분쟁의 조정사항에 대하여 합의된 때
- 3.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 ③ 제1항 단서의 경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공정거래 관련분쟁의 조정신청이나 조정의뢰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2절 공정거래집단분쟁의 조정

- 제38조(공정거래집단분쟁의 조정신청 등) ① 제2조제4호 각 목의 구분 에 따른 자로서 공정거래집단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 원분쟁별조정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집단분쟁에 대하여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집단분쟁의 조정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집단분쟁의 조정의뢰를 받은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 또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집단분쟁의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 1. 공정거래집단분쟁의 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공정거래집단분쟁의 조정에 대한 조정 결정이 있는 경우로서 공 정거래집단분쟁에 대한 조정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분쟁당사자의 신청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④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공정거래집단분쟁 조정절차의 개시를 보류할 수 있다. 이경우 그 보류기간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다.
- 1. 공정거래관련피해의 원인규명에 감정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 2. 공정거래관련피해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제39조에 따른 대표당사자가 보류를 신청하는 경우
- ⑤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공정거래집단분쟁 조정절차의 개시를 보류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류기간을 공정거래집단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분쟁당사자 및 공정거래집단분쟁의 조정을 의뢰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⑥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 거래집단분쟁의 분쟁당사자가 아닌 자의 신청을 받아 공정거래집단 분쟁 조정의 분쟁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다.
- ⑦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인 분쟁당사자가 조정원분쟁 별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공정거래집단분쟁 조정의 분쟁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공정거래관련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에 제 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⑧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는 공정거래집단분쟁 조정의 분쟁당사자 일부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한 분쟁당사 자를 제외하고 공정거래집단분쟁의 조정절차를 계속한다.
- ⑨ 공정거래집단분쟁의 조정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회에 한정하여 회당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①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조정기간을 연장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공정거래집단 분쟁 조정의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①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정거래집단분쟁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대표당사자의 선임 등) ① 공정거래집단분쟁 조정의 분쟁당사자는 그중 3명 이내의 사람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 ②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에게 대표당사자의 선임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대표당사자는 자기를 선임한 분쟁당사자를 위하여 해당 공정거

래집단분쟁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 래집단분쟁 조정신청의 취하 및 조정안의 수락·거부는 자기를 선 임한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 ④ 대표당사자를 선임한 분쟁당사자는 대표당사자를 통해서만 해당 분쟁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⑤ 대표당사자를 선임한 분쟁당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표당사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제40조(공정거래집단분쟁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조정원분쟁 별조정위원회는 공정거래집단분쟁의 조정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집단분쟁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당사자 모두가 조정조서의 작성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집단분쟁 조정조서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 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 는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로 본다.
- 제41조(조정절차 등의 준용) 공정거래집단분쟁 조정신청의 각하, 간이 조정절차, 합의의 권고, 감정 및 자문, 공정거래집단분쟁 조정절차의 종료, 소송과의 관계 및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7조제1항"은 "제38

조제1항"으로, "공정거래관련분쟁"은 "공정거래집단분쟁"으로, "조정위원회"는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로, "제34조제2항제3호"는 "제38조제9항"으로, 제34조제2항제3호 중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관련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정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가 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은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날부터 60일(같은 조 제9항 단서에 따라 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로, "제35조제1항"은 "제40조제1항"으로 본다.

제5장 보칙

- 제42조(비밀 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1.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 2. 제6조제6호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 3. 제27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 4. 제33조에 따른 감정을 하거나 하였던 사람 또는 같은 조에 따른 자문에 응하거나 응하였던 사람

제4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44조(벌칙) 제4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위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제2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위원 또는 시·도조정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연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23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 이후 조정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연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부칙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

한다)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는 사람에 대하여 제17조제2 항제5호(제23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제16조(제23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18조(제 23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이 법시행 이후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정을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정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하도급거래분쟁 및 약관분쟁에 관하여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호(약관분쟁과 관련하여 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적용할 때에는 이법 시행 이후 하도급거래분쟁, 약관분쟁 또는 약관분쟁과 관련한 공정거래집단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정을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간이조정절차에 관한 적용례) 공정거래관련분쟁에 관하여 제31 조(약관분쟁과 관련하여 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후 공정거래관련분쟁 또는 약관분쟁과 관련한 공정거래집단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 원회가 조정을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7조(감정 및 자문에 관한 적용례) 공정거래관련분쟁에 관하여 제33 조(약관분쟁과 관련하여 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후 공정거래관련분쟁 또는 약관분쟁과 관련한 공정거래집단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 원회가 조정을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8조(조정절차의 종료에 관한 적용례) 불공정거래분쟁, 가맹사업거래 분쟁, 하도급거래분쟁 및 약관분쟁에 관하여 제34조(약관분쟁과 관 런하여 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분쟁, 가맹사업거래분쟁, 하도급거래분쟁, 약관분쟁 또는 약관분쟁과 관련한 공정거래집단분쟁에 대하여 조정 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정을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
- 제9조(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약관분쟁에 관하여 제35조제2항 및 제3항(약관분쟁과 관련하여 제40 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약관분쟁 또는 약관분쟁과 관련한 공정거래집단분쟁에 대하여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조정조서의 작성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10조(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① 불공정거래분쟁, 가맹사업 거래분쟁,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 대리점거래분쟁 및 하도급거래분

쟁에 관하여 제37조(제27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관련분쟁의 조정의 뢰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후 불 공정거래분쟁, 가맹사업거래분쟁,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 대리점거래 분쟁 또는 하도급거래분쟁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정을 의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약관분쟁에 관하여 제37조(약관분쟁과 관련하여 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약관분쟁 또는 약관분쟁과 관련한 공정거래집단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하 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정을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11조(공정거래집단분쟁 조정에 관한 적용례) 불공정거래분쟁, 가맹사업거래분쟁,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 대리점거래분쟁 및 하도급거래분쟁에 관하여 제4장제2절(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을 적용할 때에는 불공정거래분쟁, 가맹사업거래분쟁,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 대리점거래분쟁 또는 하도급거래분쟁과 관련한 공정거래집단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정을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1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은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본다.
- 제1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등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 각 호의 협의회(이하 "종전협의회"라 한다)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 같은 호의 조정위원회로 본다.

1. 종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1. 제14조제1항제1호의 공정거래분쟁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른 공	조정위원회
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2. 종전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2. 제14조제1항제2호의 가맹사업거래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가	분쟁조정위원회
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3. 종전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3. 제22조제1호의 시·도 가맹사업거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	래분쟁조정위원회
·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4. 종전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4. 제14조제1항제3호의 대규모유통분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쟁조정위원회
에 따른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	
5. 종전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5. 제14조제1항제4호의 대리점분쟁조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	정위원회
리점 분쟁조정협의회	
6. 종전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6. 제22조제2호의 시·도 대리점분쟁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	조정위원회
·도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7. 종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7. 제14조제1항제5호의 하도급거래분
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하도	쟁조정위원회
급분쟁조정협의회	
8. 종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8. 제24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조정위
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	원회
자단체에 설치하는 협의회	
9. 종전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9. 제14조제1항제6호의 약관분쟁조정
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약관 분쟁	위원회
조정협의회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 각 호의 소회의 또는 분과회의(이하 "소회의등"이라 한다)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 같은 호의소위원회로 본다.

- 1. 종전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1. 제21조제2항제2호(제23조제1항에서 관한 법률 | 제19조제1항에 따라 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성된 소회의 구성된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 소 위원회 2. 종전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2.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구성된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22조제1항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 소위원회 에 따라 구성된 소회의 3. 종전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3. 제21조제2항제4호(제23조제1항에서 관한 법률 | 제16조제1항에 따라 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성된 소회의 구성된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 소 위워회 4. 종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4. 제21조제2항제5호(제26조제1항에서 한 법률」 제24조의3제1항 본문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따라 구성된 소회의 구성된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 소 위원회 5. 종전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5.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구성된 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분 조정원분쟁별조정위원회 소위원회 과회의
- ③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종전협의회 및 소회의등이 한 공정거래관련분쟁 조정과 관련된 결정 및 그 밖의 행위와 종전협의회 및 소회의등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한 결정 및 그 밖의 행위와 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 1. 종전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2. 종전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3. 종전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4. 종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5. 종전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6. 종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4조(종전협의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협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에 대하여 제15조제 6항 중 연임 제한에 관한 부분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법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 제1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 다음 각 호의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1. 종전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2. 종전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3. 종전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4. 종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5. 종전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6. 종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2항제1호에 따른다.
-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4조에 따른 가맹사업거래분 쟁조정협의회"를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호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2조제1호의 시·도 가맹사업거래분쟁 대분쟁조정위원회(이하 "시·도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5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관련분쟁의 조정신청 제4장의 제목"(분쟁의 조정 등)"을"(가맹거래사 등)"으로 한다.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삭제 한다. 제32조제1항 단서 중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정"을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관련분쟁의 조정"으로 한다.

제3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및 제34조의3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준용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한다.

②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관련분쟁의 조정신청 제3장(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7조 및 제28조)을 삭제 한다.

제3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

- 의 위원, 공무원 및 제34조의3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준용한다.
- ③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관련분쟁의 조정신청 제3장(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2조)을 삭제 한다.

제27조제4항 중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을 "공무원"으로 한다.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관련분쟁의 조정신청 제9장(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및 제79조)을 삭제한다.

제90조제7항 중 "조정원"을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9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23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제7항 중 "조정원"을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및 제29조의2)을 삭제한다.

⑦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5호의 하도급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도급거래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조정위원회(이하 "사업자단체조정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사업자단체조정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하도급거래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사업자단체조정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제24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분쟁당사자"를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마목1)에 따른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로 한다.

제24조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공정거래 관련분쟁의 조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1. 종전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2. 종전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3. 종전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4. 종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5. 종전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6. 종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